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5.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4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4월 21일 회부

라. 상정일자: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개정이유

- 찾아가는 복지의 전환체계 마련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016.7.1. 전 등에 확대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1,302' 를 '1,378' 로 개정(증 7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75' 를 '1,351' 로 개정(증 76명)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302' 를 '1,378' 로 개정(증 76명)
 - 일반직 총계 '1,297' 을 '1,373' 으로 개정(증 76명)
 - 일반직 6급 이하 '1,225' 를 '1,301' 로 개정(증 76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소외된 빈곤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인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6. 7.1. 전 등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 총수는 1,302명에서 1,378명으로 7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각 동에 배치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 공무원 8명을 감원하였기 때문임.
- 동주민센터 조직 체계의 기본모형은 현행 행정팀을 그대로 두고 복지팀을 2개팀(복지1팀·복지2팀)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현재 영등포본동을 비롯한 5개 동은 2015년도부터 복지1·2팀을 운영하고 있고, 2016.7.1. 2단계로 당산1동을 비롯한 11개 동이 복지1·2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여의동과 신길7동은 복지팀 추가 신설 없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증원하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임.
- 이와 같이 동주민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로 채용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84명은 대부분 각 동별로(4~5명) 배치되어 소외계층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따라서 소외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167억 원이고,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078억 원(기준인건비의 92.4% 수준)이며, 개정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84명에 대한 인건비 15억 원(시비 75%:구비 25%)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 따라서 인력조정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 내에서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인건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28 호
----------	---------

제출연월일 : 2016.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찾아가는 복지의 전환체계 마련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016.7.1. 전 동에 확대 시행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

1)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계획

총인원	사회복지직				방문간호사(무기계약직)		
	계	2015. 행자부 공채(순증)	2016. 공채+민경재	2017.행자부 공채 예상인원	계	동주민센터 배치	보건소 배치
111	90	3	84	3	21	18	3

2)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확충인원	정원조정사항 (사회복지직)		비 고
		순증(신규채용)	전환 (관리운영직 자연 감소분 정원 전환)	
6급 이하	84명	76명	8명	

※ 관리운영직 자연감소분 정원 전환 내역

- 2016년 6명 : 사무운영 3명, 전기운영 2명, 기계운영 1명
- 2017년 2명 : 토목운영 1명, 필기운영 1명

나.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 정원의 총수 '1,302'를 '1,378'로 개정(증 7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75'를 '1,351'로 개정(증 76명)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다.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1) 총계 '1,302'를 '1,378'로 개정(증 76명)
 - 일반직 총계 '1,297'를 '1,373'로 개정(증 76명)
 - 일반직 6급 이하 '1,225'를 '1,301'로 개정(증 7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16.3.24 ~ 4.13 (20일간)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결과: 대상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예산조치

- 1) 소요예산 : 2016년도 예산편성 확보

(단위 : 천원)

합 계	시 비	구 비	비 고
1,551,375	1,163,531	387,844	시비:구비 = 75:25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551,375	
기본금(봉급)	736,268	$1,418,300\text{원} \times 1.03 \times 84\text{명} \times 6\text{월}$ = 736,268천원
직급보조비	52,920	$105,000\text{원} \times 84\text{명} \times 6\text{월} = 52,920\text{천원}$
국민건강보험금	41,000	- 건강보험료 38,479천원 - 장기요양보험료 2,521천원
연금부담금등	203,811	- 연금부담금 151,836천원 - 퇴직수당부담금 50,288천원 - 재해보상부담금 1,687천원
수 당	517,376	- 육아휴직수당 13,760천원 - 가족수당 28,125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11,693천원 - 동근무수당 35,280천원 - 사회복지업무수당 50,4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221,382천원 - 정액급식비 65,520천원 - 명절휴가비 73,627천원 - 연가보상비 17,589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302명’을 ‘1,3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75명’을 ‘1,351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0% 이내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u>1,378</u>	<u>1,378</u>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373</u>	<u>1,373</u>			
일반직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2	31	2	11	18
	6급 이하	<u>1,301</u>	<u>1,301</u>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신 · 구조문 대비표

조례 제3조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문 경력관</th> </tr> <tr> <td>비율</td> <td>1%이내</td> <td>6%이내</td> <td>21%이내</td> <td>33%이내</td> <td>31%이내</td> <td>7.5%이상</td> <td>0.5%이내</td> </tr> </table> <p>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2. 연구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r> <tr> <td>비 율</td> <td>0% 이내</td> <td>0%</td> </tr> </table> <p>3. 별정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5급상당 이상</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h>8급 상당</th> <th>9급 상당</th> </tr> <tr> <td>비율</td> <td>0%이내</td> <td>30%이내</td> <td>55%이내</td> <td colspan="2">15% 이상</td> </tr> </table> <p>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이내	0%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0%이내	30%이내	55%이내	15% 이상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문 경력관</th> </tr> <tr> <td>비율</td> <td>1%이내</td> <td>6%이내</td> <td>21%이내</td> <td>33%이내</td> <td>31%이내</td> <td>7.5%이상</td> <td>0.5%이내</td> </tr> </table> <p>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2. 별정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분</th> <th>5급상당 이상</th> <th>6급 상당</th> <th>7급 상당</th> <th>8급 상당</th> <th>9급 상당</th> </tr> <tr> <td>비율</td> <td>0%이내</td> <td>30%이내</td> <td>55%이내</td> <td colspan="2">15% 이상</td> </tr> </table> <p>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0%이내	30%이내	55%이내	15% 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0% 이내	0%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0%이내	30%이내	55%이내	15% 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율	1%이내	6%이내	21%이내	33%이내	31%이내	7.5%이상	0.5%이내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0%이내	30%이내	55%이내	15% 이상																																																											

□ 조례 제4조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등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등
총 계		1,302	1,302				총 계		1,378	1,378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297	1,297				일반직 계		1,373	1,373			
일 반 직	3급	1	1				일 반 직	3급	1	1			
	4급	7	5	1	1			4급	7	5	1	1	
	5급	62	31	2	11	18		5급	62	31	2	11	18
	6급이하 소계	1,225	1,225					6급이하 소계	1,301	1,301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별정직 계		4	4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6급 상당 이하		4	4			
연구직 계		0	0				연구직 계		0	0			
연구사		0	0				연구사		0	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세출예산 순증가(인건비)
 - 정원조례 제2조 : 정원의 총수는 '1,302명'을 '1,3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275명'을 '1,351명'으로 한다
2. 비용추계 기준 : 사회복지직 신규 임용 인건비(9급 3호봉 기준)
 - 채용인원 : 84명(공채 59명+경채 25명)
 - 비용추계기간 : 6개월(2016.7.1일자 시행)
 - 비용추계내역 : 기본급+직급보조비+국민건강보험금+연금부담금+수당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1,551,375	
기본급(봉급)	736,268	1,418,300원×1.03×84명×6월 = 736,268천원
직급보조비	52,920	105,000원×84명×6월 = 52,920천원
국민건강 보험금	41,000	- 건강보험료 38,479천원 - 장기요양보험료 2,521천원
연금부담금 등	203,811	- 연금부담금 151,836천원 - 퇴직수당부담금 50,288천원 - 재해보상부담금 1,687천원
수 당	517,376	- 육아휴직수당 13,760천원 - 가족수당 28,125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11,693천원 - 동근무수당 35,280천원 - 사회복지업무수당 50,40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221,382천원 - 정액급식비 65,520천원 - 명절휴가비 73,627천원 - 연가보상비 17,589천원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6개월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소계(a)						
세출	인건비(보수)	1,306,564	2,765,818	2,926,253	3,094,821	3,271,928	13,365,384
	보험료+연금 (사용자분)	244,811	492,070	494,530	497,002	499,487	2,227,900
	소계(b)	1,551,375	3,257,888	3,420,783	3,591,823	3,771,415	15,593,284
□ 총 비용(a-b)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6개월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비							0
시비	지방세수입	1,163,531	2,327,062	2,327,062	2,327,062	2,327,062	10,471,779
	세외수입						0
	지방채 등						0
민간							0
기타(구비)		387,844	930,826	1,093,721	1,264,761	1,444,353	5,121,505
합계		1,551,375	3,257,888	3,420,783	3,591,823	3,771,415	15,593,284

6. 추가의견

-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정원에 대한 기준인건비 산정 시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 사업」으로 인한 정원 증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
-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 75%를 보조하고 있으나 이는 매년 발생하는 호봉과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건의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국 총무과 김승자
연 락 처	02-2670-3324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내역** :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영등포구 세출의 순증가,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조례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 기준**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산출근거, 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비용추계 결과** :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5.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6. **추 가 의 견** :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7. **작 성 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